

제 호		
토 지 출 입 증		
사 진 (2cm×3cm)	① 소 속	
	② 성 명	
	③ 생년월일	
위 사람은 「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.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인		

60mm×90mm[보존용지(1종) 120g/m²]

(뒤 쪽)

④출 입 목 적	
⑤출 입 지 역	
⑥유 효 기 간	년 월 일부터
	년 월 일까지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. 2. 독도등도서지역의생태계보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이증을 내보여야 합니다. 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	